

## 북가좌동 반려견 친화형 청년 공동체주택 「견우일가(犬友一家)」 입주자 모집 공고

우리 구는 반려견을 매개로 청년주거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반려견 친화형 청년 공동체주택 「견우일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대문구 청장



### 반려견 친화형 청년 공동체주택 「견우일가」는

-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동체주택으로 **반려견을 양육하는 만 19세 이상 만 37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대학생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 견우일가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입주자들은 공동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견우일가에는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공간 이외에 주민공동시설로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됩니다.

## I

## 공급개요

## ■ 공급 현황

공급유형	규모	위치	호	전용면적(㎡)	입주(예정)
매입원룸	지상5층 (1층 필로티)	서대문구 증가로24나길 24-14 (북가좌동 3-130)	201	30.00	2021년 1월
			202	30.49	
			203	30.04	
			204	30.03	
			301	30.00	
			302	30.49	
			303	30.04	
			304	30.03	
			401	30.29	
			402	30.13	
			501	30.29	
			502	30.13	
합 계			12호		
<p>* 2020년 7월 준공</p> <p>* 반려건을 위한 특화설계·시공 - 초인등, 플리커 프리 조명, 미끄럼방지 바닥마감재, 열회수 환기장치, 펫도어, 세족시설, 리드후크, 애견욕조, 반려견 배변처리기 등</p> <p>* 1층 : 주차공간(6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 21.12㎡</p> <p>* 4층 외부공간 및 옥상 : 인조잔디 시공</p> <p>* 서비스면적(발코니 등) : 401, 501호 : 2.52㎡, 402, 502호 : 4.32㎡</p>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담당함.
- 이 주택은 주택가에 위치하므로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대주택 입주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세대에 개별 고지되는 전기, 수도, 가스비는 포함되지 않음)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커뮤니티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용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휴 주차장 발생 시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음.

###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입주 자격요건 유지(충족) 시(청년 및 반려견 자격요건 둘다 충족)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최장 만 39세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 임대가격

- 월평균 소득기준 50%이하(자산기준 충족)와 50%초과~70%이하 임대가격 차등 적용
-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연 1회, 전환이율 6.7%)

호수	전용면적 (m <sup>2</sup>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1	30.00	15,570,000	202,800	25,950,000	338,000
202	30.49	15,840,000	206,300	26,400,000	343,900
203	30.04	15,660,000	204,000	26,100,000	340,000
204	30.03	15,660,000	204,000	26,100,000	340,000
301	30.00	15,570,000	202,800	25,950,000	338,000
302	30.49	15,840,000	206,300	26,400,000	343,900
303	30.04	15,660,000	204,000	26,100,000	340,000
304	30.03	15,660,000	204,000	26,100,000	340,000
401	30.29	15,750,000	205,100	26,250,000	341,900
402	30.13	16,110,000	209,800	26,850,000	349,700
501	30.29	15,480,000	201,600	25,800,000	336,100
502	30.13	15,570,000	202,800	25,950,000	338,000

## ■ 주택공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주택사전공개' 미 실시
- 향후 최종 입주자를 대상으로 호실배정시 주택공개할 예정이며 호실 배정은 최종 입주자 교육일에 진행할 예정임

※ 그 외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이의 제기 및 호실 변경 불가).

## ■ 주변환경 및 교통여건

-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저층 주거지역
- 대중교통
  - 지하철 : 6호선 증산역 도보 10분 내외
  - 버 스 : 761, 7613(정류장명:KT가좌지사), 721(정류장명:북가좌2동주민센터), 7738(정류장명:북가좌사거리)

## ■ 주택 위치도



■ 건물 내·외부 사진



■ 입주자 활동 프로그램(예정)

분 류		운영 내용	진행 시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 입주자 대표 등 운영진 구성	입주 초기
공동체 규약 만들기		· 입주자간 역할 나눔, 살림, 교류, 규율에 대한 약속을 입주자간 논의를 통해 마련	입주 초기
반사회		· 공동체 내 주요 이슈 논의 · 입주자 갈등 관리 · 입주자 자치 모임 운영 공유 · 기타 커뮤니티 활동	상시 (월 1회)
커뮤니티 모임		· 일상소모임 분과, 문화소모임 분과 등 자율적으로 분과 구성하여 참여 · 취미, 운동, 책, 영화 등 소모임 주제를 입주자가 기획하여 진행	상시
번개 모임		· 소셜 다이닝 · 운동경기 관람 · 클럽 번개 등	상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이웃 만나기	· 이웃주민들을 식사에 초대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이웃과의 관계 맺음을 시작하고 점차로 지역 구성원으로서 인식 형성	상시
	지역 청년 및 활동가 모임	· 근방에 사는 청년, 공동체 네트워킹(서대문구내 청년주택 청년누리, 이와일가 등) · 서대문구의 지역 활동가 네트워킹	상시
	공유주차장	· 잉여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	상시
	반려견주택 입주자 클래스	· 반려견주택 입주자를 위한 안내 및 타지역 클래스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관계를 넓혀감	상시

## II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10. 8.)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세부 자격요건	비고
입주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등록한 반려견을 양육하는 만 19세 ~ 37세 이하 (1982.10.9.~2001.10.8.출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자</li> <li>◦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 ※ 대학생 제외(졸업까지 한학기 남은 경우는 가능)</li> <li>◦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li> <li>◦ 공동주택의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교육·활동 적극 참여)에 동의하는 자</li> <li>◦ 별첨 견우일가 반려견 관리규약 이행에 동의하는 자</li> </ul>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아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 ○ 반려견 입주자격 :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① 소형견(성견이 되었을 때 체중이 7kg 이하, 체고가 50cm 이하인 견종)

\* 맹견 5종 및 기타 대형견 입주 불가(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② 모집공고일(2020.10.8.) 현재 자치구에 동물등록 완료

③ 5대 기본접종(DHPPL) 및 코로나 장염, 켄넬코프 예방접종 완료

\* DHPPL : 개 홍역, 전염성 간염, 파보바이러스성 장염, 파라인플루엔자성 기관지염, 렙토스피라

④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⑤ 2마리까지 양육 가능(장애인 보조견은 1마리 양육 가능)

※ 2마리 양육시 2마리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	1인 가구	1,322,574원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2인 가구	2,189,905원이하	
	3인 가구	2,813,449원이하	
	4인 가구	3,113,171원이하	
	5인 가구	3,469,177원이하	
	6인 가구	3,797,042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00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0천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자산 기준 미적용)

구분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	1인 가구	1,851,603원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2인 가구	3,065,866원이하	
	3인 가구	3,938,828원이하	
	4인 가구	4,358,439원이하	
	5인 가구	4,856,848원이하	
	6인 가구	5,315,858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서대문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점수와 교육 및 면접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40점, 교육참여 20점, 면접심사 20점(총 80점)

▮ 서류심사(1차)

- 선정인원 : 공급예정세대의 2~3배수 내외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배점 : 40점)

항목	기준	배점	총점
근무지 또는 거주지 ※ 무직인 경우, 현 거주지 적용	서대문구	10	40점
	서대문구 외	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50% 이하	10	
	70% 이하	7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년 본인만 해당)	3년 이상	5	
	1년 이상~3년 미만	4	
	1년 미만	3	
별도 가점 (청년 본인만 해당, 중복 인정)	독립·민주유공자의 직계비속	5	
	등록장애인	5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5	

※ 점수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 ① 근무지 또는 거주지 점수가 높은 자
- ② 월평균소득이 적은 자
- ③ 생년월일이 앞선 자(연령이 높은 순)

※ 독립·민주유공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1호, 12호, 13호 적용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기타 민주화운동 공헌자·희생자

▮ 교육 및 면접심사(2차)

- 선정인원 : 최종 입주자 12명 및 예비입주자 12명
- 평가방법 : 예비입주자 교육 참여 여부, 면접(인터뷰) 참여 태도
- 평가기준 (배점 : 40점)

항목	기준	배점	총점
교육 참여	교육 참여 여부	20	40점
면접 평가	성실성, 적극성, 협동성, 지속가능성 등	20	

### III

## 공급일정

### ■ 신청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0. 10. 15.(목) ~ 10. 21.(수) 24: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olkhs@sdm.go.kr](mailto:coolkhs@sdm.go.kr))

-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청소식-고시공고)에서 입주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접수기간 내에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전우일가 신청서류\_성명\_날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우일가 신청서류\_홍길동\_20201015)
- ※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jpg로 개별 스캔하여 개별파일로 모아 제출하고(카메라 또는 휴대폰 촬영본 제출불가),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신청기간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 ※ 최종 입주대상자는 신청서류 일체(원본)를 발표일 이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① 입주신청서 1부(별첨 서식)
- ②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체 이력으로 발급)
- ③ 근로(사업)소득자 : 재직증명서 1부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능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제출
  -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⑤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 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초본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⑥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⑦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이용동의서 1부(별첨 서식)
- ⑧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별첨 서식)
- ⑨ 자산보유사실확인서 1부(별첨 서식)(거주지 전·월세 계약서 포함)
- ⑩ 입주지원서 1부(별첨 서식)

- ⑪ 별도 가점 증빙서류(독립·민주유공자 직계비속 증빙서류(기타 민주화운동 공헌자는 별첨 서식 입주추천서로 제출), 장애인증명서, 아동시설 퇴소 증빙서류 등)

<b>반려견 양육신청 제출서류</b>	
① 양육신청서 1부(반려견 관리규약 별지서식 1)	
② 수의사의 소견서 1부(건강상태 등 확인)	
③ 동물등록을 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광견병 예방 접종에 관한 증명서	
⑤ 5대 기본 접종 및 코로나 장염, 켄넬코프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	
<p>※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경우</p> <p>* 접종시기 미도래 사유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신청시까지 진행된 접종의 증명서 제출</p> <p>* 추후 입주자로 선정 될 경우 입주 전 예방접종이 완료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p>	
⑥ 중성화 수술 완료 증명서(수술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	

■ 입주자 모집일정

입주신청서 접수	- 2020. 10. 15.(목) ~ 10. 21.(수)
↓	
소득재산 조회	- 2020. 10. 27.(화) ~ 11. 30.(월) - 조회결과 소명기간 : 12.1.(화) ~ 12.7.(월)
↓	
예비입주자 결과 발표	- 2020. 12. 10.(목) - 공급예정세대의 2~3배수 내외로 선정
↓	
예비입주자 교육	- 2020. 12. 12.(토), 12. 16.(수) 중 1회 참석
↓	
면접심사	- 2020. 12. 19.(토), 12. 20.(일) 중 1회
↓	
최종 입주자 선정	- 2020. 12. 24.(목) 발표
↓	
최종 입주자 교육 (주택공개)	- 2020. 12. 26.(토) - 호실배정, 협력적 주거생활 등에 대한 이해
↓	
계약 및 입주	- 계약 : 2021. 1. 11.(월) ~ 1. 13.(수) - 입주 : 2021. 1. 25.(월) ~ 3. 25.(목)

■ 소득 및 재산 조회

- 조회기간 : 2020. 10. 27.(화) ~ 2020. 11. 30.(월)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0.12.1.(화)~12.7.(월)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예비입주자 결과 발표

- 선정인원 : 서류심사 결과 공급예정인원의 2~3배수 내외
- 발표 일 : 2020. 12. 10.(목)
- 발표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 예비입주자 교육

- 일 시 : 2020. 12. 12.(토) ~ 12. 16.(수) 중 1회 참석

구분	1차	2차
일시	12.12.(토) 14:00 예정	12.16.(수) 19:00 예정

- 장 소 : 예비입주자 결과 발표시 공지
- 참석대상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내 용 : 팻티켓 교육, 공동체주택의 이해 등

■ 면접 심사

- 날 짜 : 2020. 12. 19.(토) ~ 12. 20.(일) 중 1회 참여
- 시간 및 장소 : 예비입주자 결과 발표시 공지

※ 예비입주자 교육 및 면접심사 불참시 최종 입주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 선정인원 : 최종입주자 12명, 예비입주자 12명(점수순)
- 발표 일 : 2020. 12. 24.(목)
- 발표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 최종 입주자 교육

- 날 짜 : 2020. 12. 26.(토)
- 시간 및 장소 : 최종 입주자 결과 발표시 공지
- 참석대상 : 최종 입주자 12명
- 내 용 : 호실 배정, 협력적 주거생활 등에 대한 이해 등

## ■ 호실 배정

- 최종 입주자 교육일에 주택공개 후 호실 배정(주택 공개시간은 최종 입주자 결과 발표시 공지)
- 호실 배정은 선정결과 입주순위에 따른 희망호실 우선선택으로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간 협의로도 결정 가능), 결정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 계약 및 입주

- 계약기간 : 2021. 1. 11.(월) ~ 1. 13.(수)
  - ※ 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입니다.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형주택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 입주시기 : 2021. 1. 25.(월) ~ 3. 25.(목)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 ※ 일정 진행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예비입주자 교육 및 최종 입주자 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이 아닌 온라인 교육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IV

## 추가 안내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시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p><b>※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b></p>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li> </ul>

	<p>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li>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입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p>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p> <p>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p> <p>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폐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p> <p>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p>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총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p>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p> <p>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p>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V

## 유의사항

- ▶ 전우일가는 반려전을 양육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주택으로 반려전 상시 양육이 기본 입주조건입니다. 따라서, 입주후 반려전을 양육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 대비 1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발생한 공실에 대하여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선정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선정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 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만을 적용하며,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 최종 입주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 수, 총자산 및 차량 가액, 소득입증 심사서류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입주자(계약)자가 된 경우에도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최종 입주자 발표 전·후, 계약체결 전, 입주 전에 반려건 사망 또는 파양 등의 사유로 반려건을 미양육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발적 신고가 아닌 다른 입주대상자의 신고나 구청의 점검에 의해 적발될 경우 선정 및 입주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려건을 미양육하게 되는 경우 모집 일정 시기에 따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입주자 발표 전 : 최종 입주자에서 제외
  - 최종 입주자 발표 후 ~ 계약체결 전 : 선정 취소
  - 계약체결 후 ~ 입주 전 : 선정 및 계약 취소(단, 반려건 미양육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청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반려건을 양육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 이 경우 추후 양육신청하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입주대상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입주대상자는 단독세대로 입주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퇴거될 수 있습니다.
- ▶ 전우일가는 반려건과 관련된 관리규약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 해당 입주자는 거주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기대출한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퇴거 조치 및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이 주택은 양도·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공동체 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VI 문의전화

- 신청 관련 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02)330-1094, 8636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형주택부 (02)3410-8544, 8549

- 별첨 1. 입주신청서식 각 1부.  
 2. 평면도 1부.  
 3. 견우일가 반려전 관리규약 1부. 끝.